

법령 · 지침 등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38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대통령령에서 건설업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업무 등의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근거 등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안전점검 등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제하는 절차가 없었는바, 안전점검 등의 결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고의 예방과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 特別法中改正法律

2003. 7. 25. 법령 제6941호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41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주기적인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제44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2003년 8월호

행한다.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주택법증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06943호

◇개정이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주택의 양적인 공급 확대에 치중하여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은 도외시되어 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3제1항 신설).
- 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3제4항 신설).

건설교통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증개정령

2003. 7. 26. 대통령령 제18067호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도시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건설교통업무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감사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 정원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건설교통업무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사관의 기능에 국민제안 및 민원업무의 총괄·관리기능을 추가함(영 제7조제2항).
- 나. 건설산업정책 및 해외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경제국을 차관 직속의 건설경제심의관으로 개편함(영 제7조의2 신설, 현행 제15조 삭제).
- 다. 종전의 주택도시국을 주택국 및 도시국의 2개 국으로 분리하면서 주택도시국 도시건축심의관을 폐지함(영 제13조, 영 제13조의2 신설).
- 라. 기술안전국의 기능에 건설교통분야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추가함(영 제16조제2항).

건설교통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증개정령

2003. 7. 26. 건설교통부령 제369호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도시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건설교통업무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감사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교통부와 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3. 7. 26. 대통령령 제18067호)됨에 따라 담당관 및 과의 배치와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외에 건설교통정책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는 참여담당관을 신설함(제2조의3 신설).
- 나. 건설경제국이 차관 직속의 건설경제심의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건설경제심의관을 보좌할 각 담당관의 사무를 분장함(제2조의2 신설).
- 다. 주택도시국이 주택국 및 도시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주택국에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분장함.

(제7조 및 제7조의2 신설).

라. 건설교통분야 안전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안전국의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안전정책과를 신설함(제10조제4항).

2003. 8. 5

〈부이사관 승진〉

- 감사담당관 李明魯
- 건설경제담당관 韓晚喜
- 항공정책과장 柳漢準
- 공항계획과장 呂洞九

- 기술정책과장 김경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洪基範

2003. 7. 29

〈과장급 전보〉

- 감사관실 참여담당관 金珍淑
- 건설경제심의관실 해외건설 협력담당관 任周彬
- 건설자원담당관 鄭三町
- 기획관리실 업무혁신담당관 曺椿純
- 수송정책실 수송정책과장 金熙國
- 수송정책실 물류기획과장 閔丙權
- 수송정책실 물류산업과장 高七鎮
- 수송정책실 교통안전과장 林義澤
- 수송정책실 국제항공과장 具本煥
- 토지국 토지정책과(NGIS팀장) 金學載
- 토지국 지가제도과장 權景秀
- 주택국 주택정책과장 姜八文
- 주택국 주거복지과장 李元宰
- 주택국 공공주택과장 俞斗錫
- 주택국 주거환경과장 韓昌燮
- 도시국 도시정책과장 鄭完大
- 도시국 도시관리과장 金炳秀
- 도시국 건축과장 李容洛
-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장 朴賢哲

-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공제분쟁조정팀장) 金完中
-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장 崔燦秀
- 기술안전국 안전정책과장 張基昌
- 기술안전국 건설안전과장 全壽炫
- 도로국 도로환경과장 劉仁相
- 수자원국 하천계획과(경인운하팀장) 鄭容光
- 고속철도건설기획단 고속철도과장 孟聖奎
- 고속철도건설기획단 운영지원과장 李濟學
- 광역교통정책실 교통정책과장 崔東昊
- 서울국토관리청 하천국장 金亨烈
- 서울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張永秀
- 원주국토관리청 하천국장 安時權
- 원주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文春浩
-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국장 金聖倬
- 대전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尹旺老
- 대전국토관리청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金相權

- 의산국토관리청 하천국장 裴承郁
- 항공안전본부 운항과장 朴元哲
- 항공안전본부 자격관리과장 鄭保和
- 항공안전본부 신공항개발과장 李榮熙
-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장 元仁喜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과장 金泰鎬
- 건설교통부 權五烈 都泰鎬 邊鍾賢 田成文 趙泰熙 朴光緒 朴明植 金善台

〈서기관 전보〉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李皓九
- 감사관실 참여담당관실 金湘道
- 기획관리실 업무혁신담당관실 金鐵中
- 수송정책실 수송정책과 沈斗輔
- 수송정책실 물류기획과 李相福
- 주택국 공공주택과 金東洙
- 도시국 도시관리과 黃晟圭
- 기술안전국 안전정책과 朴河濬
- 건설교통부 주현종 이문기

2003. 7. 26

〈국장급 전보〉

- 건설경제심의관 金昌燮
- 수송물류심의관 李聖權
- 항공정책심의관 金光在

- 국토정책국장 權度燁
- 주택국장 鄭昌洙
- 도시국장 鄭樂亨
- 육상교통국장 姜英一
- 수자원국장 崔泳喆
-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 李在鵬

- 광역교통국장 李靈根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宋道根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李在春
- 서울지방항공청장 申東春
- 한강홍수통 제소장 申仁基